
Advance Unedited Version

고문,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 소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관련 당사국과 국내예방기구에
제공하는 고문방지소위원회 지침
(2020년 3월 25일 채택)

I. 서문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불과 몇 주만에 일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이동과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는 당국이 공중 보건 비상 조치를 통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은 특히 취약한 집단을 이루는데, 이미 이들에게 적용된 구속 조치의 성격에 따른 것이며, 이들이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감옥 및 기타 구금시설은 많은 경우 심각한 과밀화 상태로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3.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대응하고자 조치를 취하면서 이미 구금시설 내외부적으로 소란이 일고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가 당국이 대유행 대응 조치를 취할 때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과 그 가족, 구금시설 및 보건의료 부문 종사자 권리를 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구금시설 내 구금자와 종사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취하는 조치는 본 지침에 명시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를 가하지 않고’ ‘동등한 돌봄’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어떤 조치를 어떤 사유로 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유가 박탈된 이들 모두와 그 가족 및 언론에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5. 고문,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는 한 국가의 존폐가 걸린 예외적인 상황이나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¹ 고문방지소위원회는 공식 격리공간도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적용 대상이라는 지침을 앞서 발표한 바 있다.² 필연적으로 해당 지침에 언급된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사람들의 이탈을 금지한 장소는 예외없이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적용 대상이며, 따라서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에서 마련한 국내예방기구(NPM•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의 감독 대상이다.

¹ 유엔고문방지협약 제 2(2)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4,7 조 참조

²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강제 격리 관련 관련 영국 국내예방기구에 전달한 고문방지소위원회(제 40 차 회기) 지침 참조: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OPCAT/NPM/2020.03.03-Advice_UK_NPM.pdf

6. 여러 국내예방기구가 현 상황에 대응하는 데 고문방지소위원회 자문을 구했다. 당연히도 국내예방기구는 자치기구로 각자 관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고문방지소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시 개별 사례에 따른 지침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문방지소위원회는 이미 여러 국제 및 역내 단체가 유의미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인지하며, 당사국과 국내예방기구에 해당 성명서를 고려하길 추천한다.³⁴ 본 지침은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의 틀 안에서 자유를 박탈한 장소에 책임이 있는 이들과 예방 방문을 하는 이들 모두에게 개괄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7. 고문방지소위원회는 공중 보건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예방 방문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지만, 예방 방문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반면 구금시설 내 구금자가 학대를 받을 위험성은 공중 보건 대응 조치로 인하여 커질 수 있다. 고문방지소위원회는 국내예방기구가 예방 목적의 방문을 지속해야하며, 예방 방문 방식에 있어 필요한 수준의 제한이 따른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구금제도 및 구금제도 책임자가 직면한 실질적인 압박의 결과로 구금자가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기에, 국내예방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구금시설, 이민수용소, 폐쇄된 난민수용소, 정신병동 및 기타 의료 현장 등 거주자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당국 조치

8. 국가가 국가 결정에 따라 구금된 이들의 보건의료에 책임을 지고, 구금시설 및 보건의료 종사자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넬슨 만델라 규칙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수감자는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며, 법적 신분으로 기인한 차별없이 무상으로 필수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³⁵

9. 수감되었거나 기타 구금 상태에 놓인 이들 간 전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문방지소위원회는 모든 국가에 다음을 촉구한다.

- 1) 구금된 인구 가운데 특히 취약한 집단 모두를 고려하여 위험에 가장 취약한 개인을 선별하도록 신속하게 평가한다.
- 2) 수감시설 및 기타 구금 상태에 놓인 인구 수를 가능한 경우 최대한 줄인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 조기, 잠정 또는 임시 석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도쿄 규칙이 명시한 비구금 조치를 전적으로 고려한다.
- 3) 공식 수용력을 넘어선 수감 인구가 수용된 구금시설과 일반 인구 전체에 제시되는 표준 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제곱미터 당 인구를 바탕으로 공식 수용력을 산출한 구금 시설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다.

³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감옥 및 기타 구금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준비, 예방 및 통제 관련 잠정 지침’(2020년 3월 15일) 및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2020년 3월 20일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따른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처우와 관련된 원칙’(2020년 3월 20일) CPT/Inf(2020)13 (2020년 3월 19일) 등을 참조.

⁴ CPT/Inf (2020)13 (2020년 3월 19일) <https://www.coe.int/en/web/cpt/-/covid-19-council-of-europe-anti-torture-committee-issues-statement-of-principles-relating-to-the-treatment-of-persons-deprived-of-their-liberty>. 참조.

⁵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만델라 원칙), UN Doc A/RES/70/175 (2015년 12월 17일), 규칙 24(1).

- 4) 미결구금 사례를 모두 검토하여 작금의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비추어볼 때 반드시 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가장 심각한 건을 제외한 모든 미결구금 대상자에게 보석을 실시한다.
- 5) 구금시설 내 인구를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 목적으로 이민수용소와 폐쇄된 난민수용소 사용 방안을 검토한다.
- 6)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에 특히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석방 시 검사를 실시한다.
- 7) 긴급한 보건 상황의 성격에 따른 비례성을 검토하고 법에 근거하여, 기존 일과에 따른 활동(regime) 제한을 최소화한다.
- 8) 기존 진정 메커니즘이 계속 기능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한다.
- 9)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을 타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면서, 일별 최소한의 외부 운동을 허용한다.
- 10) 구금시설에 남아있는 이들 모두에게 (무상으로) 충분한 시설과 물자를 제공하여, 일반인 모두가 따르는 개인 위생 수준을 구금되어 있더라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11) 일상적 면회가 보건과 관련된 사유로 제한된 경우, 수감자가 가족 및 외부 세계와 연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가령 전화, 인터넷/이메일, 화상 통화 등 기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락은 잦은 빈도로 무상으로 가능해야 하며, 연락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해야 한다.
- 12) 가족과 친척이 수감자에게 식량이나 기타 물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지역별 기존 관행을 따르며 동시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 13) 구금된 이들 가운데 가장 위험에 취약한 이들을 해당 위험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며, 동시에 구금 시 이들의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 14) 의료적 격리가 징계 목적으로 독방 감금을 하는 형태를 띠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의료적 격리는 독립적인 의료 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비례성을 따르고 한정된 시간 동안에만 이뤄지며 절차적 안전 장치를 준수한다.
- 15) 구금시설 외부에서 제공되는 의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감자에게 가능하다면 항상 이를 제공한다.
- 16) 물리적 접근은 제한되더라도, 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기본적인 안전 장치(독립적인 의료 자문 및 법적 지원 접근권, 제 3자에게 반드시 격리 여부 통보)는 계속해서 운영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 17) 구금자 및 구금시설 종사자 모두는 시행되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받아야 하며, 해당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최신 정보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조치의 유지 기간 및 시행 사유도 알려야 한다.
- 18) 구금시설 및 의료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 19) 여러 조치의 영향을 받은 구금자 및 구금시설 종사자 전원에게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 20) 앞서 언급한 사안을 비자발적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도 가능한 경우 고려한다.

III. 공식 격리시설 거주자 관련 당국 조치

10. 고문방지소위원회는 앞서 별도 지침을 통해 격리된 이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논평을 한 바 있다.⁶ 관련하여 다음을 추가하고자 한다.

- 1) 임시로 격리된 이들은 언제나 자유행위자로 대우해야 하며, 격리를 목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적용된 제한 조치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2) 이들을 ‘구금자’로 보거나 ‘구금자’인 것처럼 대우해서는 안된다.
- 3) 격리시설은 충분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실내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여러 목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4) 가족 및 지인과 적절한 수단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한다.
- 5) 격리시설은 사실상 자유 박탈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격리시설 내 거주자 모두는 지위 및 상황에 맞춰 학대 방지 목적의 기본적인 안전 장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격리 대상이 된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 독립적인 의료 자문 및 법적 지원 접근권 보장, 제 3 자에게 구금 여부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 6) 격리시설 내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이들 모두가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한다.
- 7) 격리 기간 동안과 격리 해제 이후에도 심리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IV. 국내예방기구가 취할 조치

11. 국내예방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기간에도 방문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현재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고자 취하는 합당한 조치를 고려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다만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제 14(2)조에 의거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의 임시 제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국내예방기구의 격리시설을 포함한 공식 구금 시설 방문이 완전히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12.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는 제 1 조에 명시하듯이 ‘정기적인 방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목적은 서문에 명시하듯이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을 고문,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상 무시될 수 없는 의무이다. 현재 상황에서 국내예방기구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되 예방을 위한 협력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구금시설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13. 해당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1) 앞서 제 2,3 장에 나열한 조치를 이행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 유관 당국과 논의한다.
- 2) 구금시설 관련 개별 및 통합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한다.
- 3) 구금시설 내에 있는 이들과 전자적 방식으로 소통한다.
- 4) 구금 시설 내 국내예방기구 ‘직통전화(hotline)’을 설치하고, 이메일과 우편 시설을 확보한다.

⁶ 상단 주석 2 참조.

-
- 5) 신규 및 임시 구금 시설 설립을 추적한다.
 - 6) 구금시설 내에 국내예방기구의 업무를 알리는 정보 자료를 더 많이 배포하고, 원하는 때 즉시 기밀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반드시 확보한다.
 - 7) 구금시설 내 상황을 추가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만한 (가족 및 변호사 등) 제 3자와 연락을 하도록 한다.
 - 8)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과 협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구제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V. 결론

14.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는 총체적으로 어떠한 여파를 미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이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국내예방기구는 반드시 ‘해를 가하지 않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예방기구는 대중, 구금시설 종사자, 구금자 및 국내예방기구 자체를 위해서 대유행으로 인해 초래된 상황을 반영하여 업무 방식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금 조치의 대상인 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예외적 조치를 취하는만큼 예방 변수 범위도 확대됐다.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국내예방기구는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